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Ordinances of National Local Governments

하 태 영*·손 정 혁**·오 지 은***

Ha, Taeyoung·Son, Jeonghyuk·Oh, Jieun

■ 목 차 ■

- I. 서론
- II. 주민자치회 개요
- III.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구성
- IV.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현재까지 6번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 제1저자, 교신저자, 행정안전부 사무관, 부산대학교 경영학 박사

** 공동저자,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충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수료

*** 공동저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 성공회대학교 정치정책학 석사

논문 접수일: 2021. 5. 14. 심사기간: 2021. 5. 14. ~ 2021. 6. 14. 게재확정일: 2021. 6. 14.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 주제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조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to perform matters on strengthening citizen autonomy activities, such as operating a citizen autonomy center by being established in an eup division, myeon division or dong division, and consisting of residents. To establish a residents' associ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reates and informs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to help establish and ame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were enacted in 2013 and amended six times as of today, May 2021. The local governments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ased on the standard ordinance, and enact and amen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for each local government.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residents' associations and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performed a total investigation of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of national governments (as of February 2021), and analyzed actual status on how each article is structured. Based on the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difference from the standard ordinances, and help and contribute to local governments, and person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citizen Autonomy. Currently, there are no researches on ordinances of residents' association, and researches on analysis of current status via total investigation.

□ Keywords: Citizen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Ordinances, Local Governments, Eup·Myeon·Dong

I. 서론

지방자치 도입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직원법」 제정,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 대의민주제가 가진 민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다양한 대안적 민주제도 그리고 최근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단체자치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시되어 왔다(김흥주 외, 2019).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 명칭 변경)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두고 시범실시를 시작하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 74번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모색으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9년 3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내 주민자치회

조항	내용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행정안전부, 2020). 3,500여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곳은 2017년 47개, 2018년 95개, 2019년 408개, 2020년 6월 말 626개로 증가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10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171개, 부산 10개, 대구 6개, 인천 70개, 광주 32개, 대전 21개, 울산 4개, 세종 10개, 경기 104개, 강원 42개, 충북 3개, 충남 64개, 전북 3개, 전남 28개, 경북 10개, 경남 48개이다.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6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¹⁾. 2016년을 제외하고 매해 개정되어 안내되었다. 표준조례안은 주민자치 관련 기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현장과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다. T/F를 구성하기도 하고,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여러 기간과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표준조례안을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현황 분석을 통해 추후 표준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II. 주민자치회 개요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기능이 마을이나 동네 단위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린자치가 마을(동네) 단위에서 제대로 작

1) 제정 : 자치제도과(2013.6.20.), 1차 개정 : 자치제도과(2014.7.24.), 2차 개정 : 자치제도과(2015.6.17.), 3차 개정 : 자치제도과(2017. 2. 1.), 4차 개정 : 자치분권과(2018. 8. 30.), 5차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2019. 8. 28.), 6차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2020. 4. 22.)

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orgotten, 2016; 최인수 외, 2020 재인용). 한국의 주민자치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과 주민자치센터 관련 심의·자문 및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설치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보다는 여가·문화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하태영, 2020).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 민관 협치 기구이다. 주민자치 사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참여예산, 주민세 등의 재원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후 추천을 통해 30명 이상 위원을 선정하며, 주민공동조직 등 기관 추천자도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0).

1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모두 없는 곳도 있지만, 설치할 경우 둘 중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에 주민자치회가 최초 설치된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의하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설치 전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며,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또는 전체 위원이 최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포함되기도 한다²⁾.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연구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최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 단위의 연구가 일부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분석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보고서 (2017년~현재)

연도	제목 및 내용	발행처 및 연구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분석, 평가, 시사점 -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 방안, 정책건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한부영)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 농촌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농촌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 (지역재단: 서정민 외 5명)

2)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경우, 경과조치 ① 개정된 본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연도	제목 및 내용	발행처 및 연구자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 지표의 구성 및 평가(가치지표, 행위지표)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황상윤·이승민)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광주광역시 (지역미래연구원: 김수람 외 3명)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 부강면 주민자치회 전문가 조사 및 평가 -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추진 방향과 과제,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곽임근·최민지)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후평1동)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자원 조사 연구 - 마을주민 욕구 설문조사를 통한 마을현안 파악 - 마을자원 조사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제언 	춘천시 (강원대 산학협력단: 김대건 외 8명)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 성남시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성남시 (희망제작소: 손정혁 외 3명)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 주민자치회 인지도, 조직 구성,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정책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전대욱·장인성)

자료: 연구자 구성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사례, 활성화 논의, 법제 관련 연구들로 주민자치회 발전 및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연구는 없다.

〈표 3〉 주민자치회 관련 연구논문 (2017년~현재)

연도	제목 및 내용	발행처 및 연구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것에 따른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문제와 주민자치회의 조직형태 문제 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안철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도모 	인문사회 21 (신미애)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 제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안철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입법적 준비를 통해 지방자치법과 	토지공법연구 (장교식)

연도	제목 및 내용	발행처 및 연구자
	<p>지방분권특별법에 보다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자치법의 제정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아가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적 실정과 특색을 반영하는 조례의 정비도 단행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형화와 특성 분석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성공모형의 탐색적 적용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사회 주요 요건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원도심 4개구의 유형화를 시도 -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요 요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자치회 성공모형의 모형과 특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유형화 분석 수행 	한국행정연구 (서인석·윤병섭)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 주민자치회가 지역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인정하고 각각 조례와 법률에서 정할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필요 	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사회의 새로운 자치와 마을 연구의 성찰 -홍동면 주민자치회의 실험- - 홍성군 홍동면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재편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 - 주민자치회의 실험은 지역사회, 즉 고을의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 민속학의 마을 연구의 적실성을 성찰, 지방사회 연구의 새로운 과제 제시 	비교민속학 (진필수)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 -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흐름을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 - 국내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 제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방향 제시 	시민사회와 NGO (하태영)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 논의 - 주민자치회에 관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내용들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문제점 제시 	법학연구 (최철호)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 -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더 심화하는데 필요 	지역정책연구 (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주민자치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특별회계의 개선안을 도출 	현대사회와 행정 (김홍주·이세진·박상철)

자료: 연구자 구성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구성·운영 연구, 사례 연구, 법제적 연구 등이 있다. 학위논문 역시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연구는 없다.

〈표 4〉 주민자치회 관련 학위논문 (2017년~현재)

연도	제목 및 내용	발행처 및 연구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주민자치회 실시의 바람직한 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 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조사 및 실증분석 -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모형의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노영은)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 -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 제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양평호)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제적 연구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입법적 정비방안 모색 - 주민자치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개선 방안 	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진동섭)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의 핵심을 추출하여 지방자치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단체자치적 가치와 주민자치적 가치를 선별적으로 정리 -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요인을 재구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박상범)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전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제도, 시설, 재정의 네 가지 측면 분석 - 전주만의 지리적·지역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전주통합주민자치회의 기준을 선정·운영 필요성 제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이성순)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위원 및 임원 구성에 대한 평가와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 모색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 (신수경)

자료: 연구자 구성

Ⅲ.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구성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준조례는 법령의 합치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제공되며,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된다(최인수 외, 2020).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입안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13년 제정되어 2020년까지 6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되었다. 담당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담당부서는 자치분권제도과이다. 표준조례는 주민자치 현장,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표준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2018년에 있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온 시범 주민자치회를 2018년부터 위원의 추천 선정,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주민세 연계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1. 2013~2017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13년 제정되었고 2014년 1차 개정, 2015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으로 2017년까지 3번 개정되었다. 201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운영 원칙(제3조), 설치 등(제4조), 기능(제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의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권한(제8조), 위원의 선정(제9조), 위원선정위원회(제10조), 주민자치회의의 장(제11조), 간사(제12조), 감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운영(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위원의 의무(제16조), 정치적 중립(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제1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제2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22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보칙은 감독(제23조), 운영세칙(제2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일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201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4조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 -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 이내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2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 (위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 이상의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또는 군·구)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8조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지역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께 규정할 수 있음)
제9조 (위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1. 지역대표위원 : 이장·통장(또는 통장, 이장) 연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명 (※ 지역에 따라 이·통장 협의회, 이·통장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2.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명 3.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명 -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위원선정 위원회를 둠 -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위촉

조항	주요 내용
	1.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추천위원 ○명 2. 이·통장(또는 이장, 통장) 연합회 추천위원 ○명 3.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명 (※ 지역 여건에 따라 추천자를 이·통장연합회장, 학교장, 농협조합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선정위원회는 성·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 (간사)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13조 (감사)	-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함 -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제18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 (위원의 대우)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201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연구자 정리

2014년 1차 개정, 2015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이 되었고, 큰 변화 없이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었다. 2017년 개정 역시 위원 자격 여부의 범위 확대, 위원선정위원회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일부 신설) 등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단체보험 가입 등이 신설되었다.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2017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의 기능(§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기능(수행업무)을 구체적으로 명시 1.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위원의 자격(§7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 확대 (현행) 시·군·구의회 의원 → (개정) 지방의회 의원
위원의 선정(§9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민간단체(주민조직)의 범위 확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범위(§10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읍면동 권역별로 위원선정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 •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범위 확대(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지역 주민공동조직 추천위원 ○명)
간사 선임 및 수당 지급근거(§12①·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이 아닌 자(주민)도 간사로 선임 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의 실비와 수당 지급 가능
주민 의견수렴 절차 (§15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의견수렴 방법 및 의견요청 근거 신설(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1④·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소속 공무원 지원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 활동 보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사무실 제공 근거 신설
종사자 단체보험 가입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근거 신설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연구자 정리

2.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2018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대표 역할 수행 및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능·권한 부재 • (개정) 주민총회 및 자치(또는 마을) 계획 등을 주민자치회 기능에 포함하고, 용어 정의 신설 및 수탁업무 확대
주민총회 및 자치(또는 마을) 계획 운영(신설)(§1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구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자격 확대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3가지 유형(7~15명, 10~20명, 20~30명)으로 30명 이내로 제시. 위원자격을 해당 지역에 주민 및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으로 한정 및 만 19세 이상만 위원자격 존재 • (개정) 20~50명으로 확대하고,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까지 위원자격 부여, 지역여건에 따라 위원의 연령 조정 가능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역대표 및 직능단체 추천, 주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자율 운영 중 • (개정)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참여 희망 주민 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 후 추첨 및 주민공동조직 등 기관 추천자도 공개추첨으로 선정가능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가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 보조를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 지역 여건 고려 등 지자체 선택에 따라 간사를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 (§13, 1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원·주민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토록 규정 • (개정) 위원 추첨 전까지 주민자치교육과정(6H이상) 이수 의무화, 외부 감사 선임, 사익추구 금지 의무조항 신설 및 위반 시 해촉사유에 포함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및 분회 설치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서 및 벽지지역, 지리적 교통이나 통신 불편지역에 분과위 설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부재 • (개정)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필요 시 분회설치, 일반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가능토록 신설
다른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신설)(§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주민자치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용사무실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는 주로 위원수당, 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주로 지원 • (개정)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 등을 지원가능토록 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토록 협력 조항 반영, 필요 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위원선정위원회 폐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읍·면·동장, 이통장연합회, 주민공동조직 등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을 시·군·구청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 등 결정 • (개정) 위원 선정 방법(추첨제) 등의 개선으로 선정위원회 설치 불필요로 폐지하되, 공정한 추첨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 위원회 근거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201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리

3. 2019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2019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주민총회의 참석 대상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확대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는데, 큰 개정 사항은 없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2019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법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18년 3월)함에 따라, 목적 조항에 반영 				
약칭 위치 변경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 변경 				
주민자치회 정의 변경(\$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 (문제점) 상위법인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불일치 (개정내용) 상위법인 지방분권법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규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주민총회 참여 자격 확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및 문제점) 주민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불일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민총회 참여 자격</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민자치회 위원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해당 읍·면·동 주민</td> <td style="text-align: center;">- 해당 읍·면·동 주민 -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td> </tr> </tbody> </table>	주민총회 참여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 해당 읍·면·동 주민	- 해당 읍·면·동 주민 -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주민총회 참여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 해당 읍·면·동 주민	- 해당 읍·면·동 주민 -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내용) 주민총회의 참석 대상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명확화(\$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 위촉 가능하나,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문제점)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 부재 (개정내용)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 				
기타 조문 정비(\$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표준조례 개정 시 발생한 오타자 수정 				

자료: 행정안전부(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리

4.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2020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의 강화, 기능 및 권한의 (통합 등) 명확화, 주민자치회 참여의 활성화 및 연계 강화, 그리고 지역의 운영 자율성 존중, 투명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능 및 권한 명확화	기능 우선순위 조정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협의-수탁-주민자치 순으로 규정 • (개정) 주민자치-협의-수탁 순으로 변경, 주민자치 업무에 공동체 형성 추가
	권한 규정, 기능과 통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자치회의의 기능과 유사한 내용이 권한 규정에서 반복 • (개정) 권한 규정 삭제하여 내용상 중복 제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승계 명확화 (부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의 기능(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자문)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 • (개정) 기능 승계를 규정하여 기능 명확화, 정관 승계 삭제
참여 활성화 및 연계 강화	위원 정수 확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하도록 규정 • (개정) 위원 정수 상한 삭제,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 자격 확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참여 미규정 • (개정)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 개방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
	주민세활용 강화, 타 주민참여 기구와의 연계 강화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자치회에 주민세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협력 의무 규정 • (개정)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노력 의무 부여
운영 자율성·투명성 확보	주민총회 개최 횟수 예외 규정 신설 (§14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 (개정)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정기회의 개최 횟수 자율화, 임시회의 개최 요건 변경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읍·면·동장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 • (개정) 정기회의 횟수를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 변경
	감사 공개범위 확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 (개정) 감사결과를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주민총회에도 제출·보고

구분		주요 내용
기타 개선 사항	위원 모집 홍보 규정 신설(§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원 모집 홍보 근거규정 미비 • (개정)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마련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규정 삭제 (§12.부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원봉사자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규정 삭제(실비만 지급),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 마련
	부처명칭 변경 반영 (부칙§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범실시 주체가 행정자치부로 기재 • (개정) 시범실시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자료: 행정안전부(2020),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서 정리

5. 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조항별 정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5개의 장, 25개의 조 그리고 부칙이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운영 원칙(제3조), 설치 등(제4조), 기능(제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의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위원의 선정(제9조), 주민자치회의의 장(제11조), 간사 및 사무국(제12조), 감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주민총회(제14조의2),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제14조의3), 운영(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조(권한)³⁾,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⁴⁾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위원의 의무(제16조), 정치적 중립(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위원의 대우(제19조), 위원의 해촉(제2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보칙은 감독(제23조), 보험(제24조), 운영세칙(제2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020년 개정: 주민자치회의의 기능과 유사한 내용이 권한 규정에서 반복되어, 권한 규정 삭제를 통한 내용상 중복 제거

4) 2018년 개정: 위원 선정 방법(추첨제) 등의 개선으로 선정위원회 설치 불필요로 폐지

부칙은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 유효기간(제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또는 마을)계획 정의
제3조 (운영 원칙)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음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 (위원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9조 (위원의 선정)	- 공개추첨으로 선정,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 -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함

조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위촉,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함 - 시·군·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음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음 -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13조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함.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음 -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제14조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제14조의 2 (주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함

조항	주요 내용
제14조의 3 (자치(마을) 계획의 구성 등)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 계획안을 수립함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시·군·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함
제15조 (운영)	-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음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제16조 (위원의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됨
제17조 (정치적 중립)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18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 (위원의 대우)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제20조 (위원의 해촉)	- 시·군·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함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군·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함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시·군·구청장은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23조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제24조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음
제25조 (운영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함
부칙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 경과조치 :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연구자 정리

IV.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받아(2021년 2월 기준), 조항별로 전수 조사 후 분석하였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국 1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었다(60.1%).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 수	조례 수	제정률	구분	지자체 수	조례 수	제정률
서울특별시	25	22	88.0%	경기도	31	22	71.0%
부산광역시	16	8	50.0%	강원도	18	8	44.4%
인천광역시	10	9	90.0%	충청남도	15	15	100.0%
대전광역시	5	4	80.0%	충청북도	11	2	18.2%
광주광역시	5	5	100.0%	전라북도	14	3	21.4%
대구광역시	8	6	75.0%	전라남도	22	8	36.4%
울산광역시	5	4	80.0%	경상북도	23	2	8.7%
세종자치특별시	1	1	100.0%	경상남도	18	18	100.0%
제주특별자치도	1	-	0.0%	합계	228	137	60.1%

자료: 연구자 구성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중 시행규칙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왕시, 인천시, 강원도 홍천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창원시로 총 14개이다.

조례 제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3년 27개, 2015년 2개, 2016년 8개, 2017년 4개, 2018년 20개, 2019년 45개, 2020년 31개이다. 2019년이 45개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다음으로 2020년에 3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137개 지방자치단체 중 70.1%(96개)는 2018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 이후 개정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65개이다. 개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4년 1개, 2015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15개, 2020년 45개, 2021년 2개이다. 2020년이 45개로 가장 많이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하였고, 그다음으로 2019년에 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였다. 대체로 2019년 이후 조례 개정이 활발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 조례명에 ‘시범’ 단어를 넣은 지방자치단체는 86개이며(62.8%), ‘시범’ 단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51개이다(37.2%).

주민자치회 조례와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등) 조례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창원시로 총 15개이다.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표준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성·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지역의 운영 자율성 존중’, ‘투명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표준조례의 개정 방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주요 조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1. 총칙 분석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운영 원칙(제3조), 설치 등(제4조), 기능(제5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2〉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총칙 분석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조 (목적)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제2조 (정의)	-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 : 123개* * 세종시 포함 : 세종시의 경우 위원의 의무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언급
제3조 (운영 원칙)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제4조 (설치 등)	- 주민자치회 분회(또는 지회) 설치할 수 있음 : 24개 - 통·리(또는 마을별) 단위 마을자치회 설치 : 5개* * 경기 부천시·경북 의성군·전남 담양군·세종시(주민자치회 조례 내 명시), 충남 논산시(별도 마을자치회 조례 제정) ※ 세종 : 리·통 개발위원회 → 마을회
제5조 (기능)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 대부분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 편성, 심사 및 수행, 민관협력 강화 필요 업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있음

자료: 연구자 구성

총칙은 주민자치회 기본 구성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지역 내 위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조에서 주민자치회를 정의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조례를 제정한 137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12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제4조의 분회 및 통·리(또는 마을별) 단위 마을자치회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근린자치를 위한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주민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약 20%인 2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분석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위원

의 선정(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제11조), 간사 및 사무국(제12조), 감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주민총회(제14조의2),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제14조의3), 운영(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크게 위원 구성 및 선정, 운영구조,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선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선정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50명 이하 : 1개(세종시) - 15명 이상 25명 이하 : 1개(산청군) - 15명 이상 30명 이하 : 3개(태백시, 홍천군, 함양군) - 20명 이상 30명 이하 : 8개(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증평군,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순천시) - 20명 이상 33명 이하 : 1개(목포시) - 20명 이상 40명 이하 : 8개(인천 동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 동구, 가평군, 진천군, 통영시, 사천시) - 20명 이상 50명 이하 : 49개 - 20명 이상 60명 이하 : 1개(정선군) - 20명 이상 80명 이하 : 1개(의성군) - 20명 이상 100명 이하 : 1개(광산구) - 25명 이내 : 7개(영도구, 인제군, 공주시, 담양군, 장성군, 신안군, 안동시) - 25명 이상 40명 이하 : 1개(남양주시) - 25명 이상 50명 이하 : 3개(종로구, 해운대구, 울산 북구) - 30명 이내 : 4개(동래구, 미추홀구, 군산시, 완주군) - 30명 이상 : 4개(유성구, 군포시, 홍성군, 해남군) - 30명 이상 50명 이하 : 26개 - 35명 이내 : 1개(강릉시) - 50명 내외 : 1개(은평구) - 50명 이내 : 16개 ※ 시·군·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 조정, 변경할 수 있음 : 5개(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태안군)
제7조 (위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 1개(화성시) - 만 15세 이상 : 3개(해남군, 의성군, 진주시) - 16세 이상 : 3개(광산구, 세종시, 성남시) - 만 16세 이상 : 1개(순천시) - 18세 이상 : 23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 14개 - 19세 이상 : 24개 - 만 19세 이상 : 48개* * 경남 사천시 : 만 19세 이상(공개모집만 해당하며 추천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또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2명 이내 선정 가능) - 규정 없음 : 20개 - 위원 자격 주민등록 : 모든 조례에 포함(137개) * 1년 이상 자격 명시 : 용산구, 거창군 - 위원 자격 외국인 : 43개* * 1년 이상 자격 명시 : 용산구 - 위원 자격 사업장 종사자 : 134개* * 1년 이상 자격 명시 : 용산구 ※ 관련 자료 제출 명시(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3개(금천구, 관악구, 미추홀구) - 위원 자격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128개* * 1년 이상 자격 명시 : 용산구 ※ 단체, 학교, 기관 등 범위, 설명 명시 : 15개(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대구 동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용진군, 당진시, 창원시)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위원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수 사전 4시간 이상 : 11개 - 사전 5시간 이상 : 1개(울산 동구) - 사전 6시간 이상 : 100개 ※ 교육 효력 2년 일부 명시 - 사전 8시간 이상 : 1개(안산시) - 사전 6시간+사후 2시간 총 8시간 : 4개(용산구, 중랑구, 동작구, 송파구) - 위촉 사후 6시간 : 3개(시흥시, 흥천군, 평창군) - 구체적 교육 시간 명시 없음 : 3개(종로구, 달서구, 세종시(신규 위촉위원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하여야 함)) - 명시 없음 : 14개 - 위원의 결격 사유는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으며(130개), 내용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회의원, 지방의원, 해당 시·군·구 공무원,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원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해촉된 사람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강동구 :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강원 고성군 : 직전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률이 70% 미만인 사람 - 위원 선정 방법 공개추첨 : 120개 / 선정위원회 선정 : 16개 / 운영세칙 : 1개(정선군) * 남양주시 등 포함 : 공개모집 후 심의 선정 50% 이상, 무작위 선발 후 공개추첨 50% 이내 - 공개모집 50%, 단체·조직 추천 50% : 8개 - 공개모집 60%, 단체·조직 추천 40% : 50개 - 공개모집 70% 이상, 단체·조직 추천 30% 이하 등 : 13개 - 공개모집 100% : 2개(서대문구, 마포구) - 명시가 없거나, 운영세칙, 자율결정 등 기타 존재 - 단체·조직 추천에 있어 대부분 읍·면·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등이 명시(104개)되어 있고(이·통장협의회 명시 포함), 단체의 범위 등 설명도 있음* *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조항	주요 분석 내용
	<p>2. 기관 :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기관</p> <p>3. 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p> <p>***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 단체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p> <p>- 언급이 없는 경우는 33개</p> <hr/> <p>- 위원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명시 : 80개</p> <p>-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직능 등 다양한 주민 참여 고려 명시 : 10개</p> <p>- 명시 없음 : 47개</p> <hr/> <p>- 특정성별 60% 이하 : 117개</p> <p>- 여성위원 40% 이상 : 5개(영도구, 군산시, 완주군, 목포시, 안동시), 50% 이상 : 1개(예산군), 1/3 이상 : 1개(담양군)</p> <p>- 비율 명시 없음 : 12개</p> <p>- 사전 결정 및 공개 : 1개(세종시)</p> <hr/> <p>- 위원 연령 할당 및 제한 규정 40대 이하 10% 이상 : 1개(강북구), 40대 이하 15% 이상 : 10개, 40대 이하 20% 이상 : 3개(양천구, 관악구, 계양구)</p> <p>- 청·장년층(65세 이하) 50% 이상 : 1개(논산시)</p> <p>- 만 19세 미만 청소년 2명 이내 선정 가능 : 1개(사천시)</p> <p>- 자치활동가 우선 선정 가능 : 1개(해남군)</p> <p>- 사전 결정 및 공개 : 1개(세종시)</p> <p>- 위원 연령 할당 및 제한 규정 없음 : 119개</p> <hr/> <p>- 예비후보자 5명 이내 : 55개</p> <p>- 각 호별 5명 이내 : 56개</p> <p>- 6명 이내 : 1개(영등포구)</p> <p>- 각 호별 6명 이내 : 1개(광진구)</p> <p>- 예비후보자 10명 이내 : 6개(서대문구, 마포구, 대전 동구, 대덕구, 당진시, 익산시)</p> <p>- 각 호별 10명 이내 : 5개(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남동구, 남양주시)</p> <p>- 총원의 20% 이내 : 1개(광주 서구), 위원정수의 1.5배 : 1개(합천군)</p> <p>- 예비 후보자를 정한다는 언급만 있음 : 6개(성북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계양구, 광주 남구)</p> <p>- 명시 없음 : 5개(수원시, 광명시, 인천시, 정선군, 담양군)</p> <hr/> <p>- 추천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등 구성 명시는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p> <p>- 보통 5~9명으로 구성되며, 동장이 포함되거나 일부 위촉권을 가짐(동장 추천 0명,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0명 등)</p>

자료: 연구자 구성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상한선을 삭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표준조례가 제시한 30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성구, 군포시, 흥성군, 해남군으로 4개 지역이다. 상한선은 있지만 50명 이상을 지정하고 있는 지역은 광산구(100명 이하), 의성군(80명 이하), 정선군(60명 이하)이다.

제7조 위원의 자격은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화성시가 15세 이

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낮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20개이다. 외국인의 위원자격을 명시한 지역은 43개로 나타났다.

제9조 위원의 선정에서 위원의 기본 자격으로 교육 이수시간을 명기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이 제시한 6시간보다 많은 8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개(안산시, 용산구, 중랑구, 동작구, 송파구)가 있으며, 위촉 후 사후 교육(시흥시, 홍천군, 평창군)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위원 선정은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모집 비율이 높을수록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100%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지역(서대문구, 마포구)이 있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0대 이하와 65세 이하 비율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시한 곳은 80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명시한 곳은 10개이다.

2) 주민자치회 운영구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회장, 감사 등 운영구조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4〉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주민자치회의 운영구조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 주민자치회의 장 1명 : 모든 조례 137개* * 연제구 명시 없으나 1명으로 추정
	- 부회장 1명 : 79개, 2명 : 48개(완주군, 곡성군 남1, 여1), 1~2명 : 7개(미추홀구,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2명 경우 남1, 여1), 익산시, 해남군, 의성군), 1~3명 : 2개(도봉구, 목포시)
	- 명시 없음 : 1개(연제구)
	- 호선에 의한 선출 : 127개(경쟁 시 보통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 - 투표에 의한 선출 : 2개(가평군, 당진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 : 1개(화성시) - (위원 중)선출 명시 : 6개(인천 동구, 성남시, 의정부시, 부여군, 곡성군, 해남군) - 명시 없음 : 1개(연제구)
제12조 (감사 또는 사무국)	- 임원진 임기 1년 : 1개(김해시), 2년 : 105개, 명시 없음 : 31개
	- 임원진 연임 1회 : 100개, 2회 : 4개(부산 북구, 미추홀구, 담양군(회장), 사천시(회장,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서 연임))
	- 연임 가능만 명시 : 3개(구리시, 김포시, 금산군), 운영세칙 : 1개(해남군)
	- 불가 및 명시 없음 : 29개
제12조 (감사 또는 사무국)	- 고문 관련 명시 및 가능 : 28개 ※ 지방의회 의원(당연직 또는 참여 가능), 전임 회장, 주민자치회 의결 추천 등
	- 고문 관련 명시 없음 : 109개
제12조 (감사 또는 사무국)	- 감사 관련 명시 : 118개
	- 인원 수를 명시하기도 하고(1명 : 41개), 없는 경우도 있음

조항	주요 분석 내용
	- 위원(또는 주민) 중 간사 선정, 호선 또는 자치회장이 선임, 지명 등 ※ 도봉구 :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채용, 2회 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봉구 주민 중 채용 - 간사 관련 명시 없음 : 19개 - 사무국 관련 명시 있음 : 71개, 사무국 관련 명시 없음 : 66개 - 자원봉사자 관련 명시 있음(간사 및 사무국 등 보조) : 133개 - 자원봉사자 관련 명시 없음 : 4개(광주 서구, 광산구, 증평군, 시흥시(자치활동가, 사무국장 보조 또는 사무국 배치)) -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이 대부분 있음(134개), 관련 명시 없음 : 2개(수원시, 증평군, 운영세칙 1개(시흥시))
제13조 (감사)	- 외부전문가 가능 및 포함 명시 : 118개, 위원 중 호선 : 18개, 명시 없음 : 1개(담양군) - 감사 1명 : 28개, 2명 : 99개, 3명 : 2개(군산시, 완주군), 1~2명 : 3개(양천구, 당진시, 목포시), 1~3명 : 1개(김포시), 2~3명 : 1개(마포구), 2명 이상 : 1개(금천구, 인원 명시 없음 : 2개(담양군, 안동시)) -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명시 있음 : 128개, 명시 없음 : 9개

자료: 연구자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1명의 주민자치회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부회장은 1~3명을 두고 있다. 주민자치회장의 연임은 경험 축적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의 권한을 독점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장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거나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이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71개이다. 감사에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 감사 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및 제출 여부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118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128개)을 명시하고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방식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운영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5〉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주민자치회의 운영방식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4조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은 대부분 있으며(4개 제외(수원시, 안양시, 금산군, 담양군)), 대부분 분과위원회에 위원과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음(108개) - 분과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은 69개가 있고, 68개가 없음 -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 101개, 분과위원 중 호선 : 20개, 마을자치회 위원 중 호선 : 1개(부천시), 운영세칙 : 1개(서산시), 관련 내용 없음 : 14개 - 천안시 : 필수 분과 4개 이상 명시 - 청양군·태안군 : 필수 분과 4개 구성, 1~2개 분과 추가 가능 - 의성군 : 분과위원회에 '청소년분과' 운영 조례 명시
제14조의 2 (주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연 1회 개최 : 26개, 연 1회 이상 개최 : 104개, 명시 없음 : 7개(영도구, 동래구, 아산시, 군산시, 완주군, 목포시, 안동시) - 주민총회 횟수 조정 가능 명시 : 25개(양천구 : 횟수 또는 개최주기 변경 가능) - 주민총회 성립 정족수 명시 없음 : 100개, 운영세칙 : 26개, - 시행규칙 : 3개(동작구·송파구(시행규칙 미제정), 서산시(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의사 정족수는 2% 이상 참석)) - 성동구 : 동 주민 인구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 - 광주 동구 : 동 주민 인구의 2% 이상 참석 - 홍성군 : 주민총회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각 읍·면 인구의 1% 이상 참석. 단,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 - 담양군 : 120명 이상 주민 참석 - 사천시 : 별도 기준 있음(조례에 따른 별표1) - 창원시, 진주시, 거창군 : 위원 수의 3배수 이상 - 주민총회 의결 기준 참석주민 과반 찬성 : 122개, 운영세칙 : 3개(은평구, 계양구, 평택시), 명시 없음 : 12개 - 주민총회 홍보(상정 안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 가능 여부 명시 : 129개, 없음 :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품 제작·배포 명시: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 논산시, 순천시, 의성군 - 주민총회 사전 투표 가능 여부 명시 : 123개, 없음 : 14개 - 주민총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여부 명시 : 119개(홍천군 : 요구 아님 출석 가능), 없음 : 18개 ※ 주민총회 결정사항 중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동구·대덕구 : 주민자치회 예산안 - 시흥시 : 주민자치회와 마을실행법인과 연계 및 승인 - 당진시·서천군 : 주민공론화가 필요한 주민공모사업 계획안 - 의성군 : 일반농산어촌개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재생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제14조의 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마을)계획 명시 있음 : 130개, 없음 : 7개(영도구, 동래구, 아산시, 군산시, 완주군, 목포시, 안동시) -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주민자치회 통보 있음 : 127개, 없음 : 10개 - 자치계획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열되어 있고, 표준조례에서 7가지 대부분 명시 : 71개, 1~2개 정도 일부 제외 : 66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 대전 동구, 대덕구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 대전 동구, 대덕구, 해남군 마을복지, 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 : 시흥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5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월 1회 : 121개, 월 1회 이상 : 1개(진주시) - 분기 1회 : 5개(광진구, 구로구, 울주군, 산청군, 합천군), 분기 1회 이상 : 3개(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 운영세칙 : 6개(인천 서구, 의정부시, 시흥시, 논산시, 의성군, 밀양시), 세부사항 없음 : 1개(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회의 요건 자치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 134개, 운영세칙 1개(시흥시), 세부사항 없음 : 2개(춘천시,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회의 요건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경우 : 100개, 운영세칙 1개(시흥시), 세부사항 없음 : 3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회의 요건 읍·면·동장, 자치회장 협의하는 경우 : 30개, 운영세칙 1개(시흥시), 세부사항 없음 : 10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회의 요건 위원 1/3 요구하는 경우 : 134개, 운영세칙 1개(시흥시), 세부사항 없음 : 2개(강원 고성군, 증평군) - 회의 개의는 과반 출석, 회의 의결은 과반 찬성 : 136개, 세부사항 없음 : 1개(증평군) - 공무원 회의 출석요구 있음 : 128개 (홍천군 : 요구 아닌 출석 가능), 없음 : 9개 - 읍·면·동장 회의 출석 및 발언 있음 : 127개, 없음 : 10개

자료: 연구자 구성

주민자치회는 대부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의성군은 특정 분과를 지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주민총회 성립 정족수와 관련하여 광주 동구는 동 주민 인구의 2% 이상 참석, 홍성군은 각 읍·면 인구의 1% 이상, 최소인원 50명 이상을 명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치(마을)계획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항목 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마을복지, 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을 운영하기도 한다.

임시회의를 읍·면·동장과 자치회장의 협의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0개 지역에서 명시하고 있다.

3. 주민자치회의 위원 분석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의 의무(제16조), 정치적 중립(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위원의 대우(제19조), 위원의 해촉(제20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6〉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주민자치회의 위원 분석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6조 (위원의 의무)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위원 위촉 후 1년 이내에 일정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 정기회의를 3회 이상 불참 시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등 추가 명시 : 8개(양천구, 인천 동구,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순천시, 통영시)
제17조 (정치적 중립)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제18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 2년 : 모든 조례 137개 - 위원의 연임 1회 : 39개, 2회 : 22개, 3회 : 1개(남동구)* ※ 추첨을 거치거나 또는 추첨 없이, 임기 중 일정시간 교육이수의 연임조건 있는 경우 있음 * 최초 위촉 포함 4번 연속 위촉된 경우 향후 2년간 위촉될 수 없음 - 연임 가능만 명시 : 51개, 운영세칙 : 1개(평택시(연임 시 사전교육 이수)) - 불가 및 명시 없음 : 23개
제19조 (위원의 대우)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지급 가능) : 모든 조례 137개 ※ 은평구 :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 제공 서산시 :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20조 (위원의 해촉)	- 위원 해촉에 대한 내용은 137개 모든 조례에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발의, 재적위원 2/3 의결 시 해촉됨 - 총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137개 모든 조례에 있으며, 총원 및 보궐위원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음

자료: 연구자 구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2개, 연임 불가를 명시하거나 연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3개이다.

4.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분석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7〉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분석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 표준조례의 항목 8개 중 일부 포함 또는 수정 및 추가한 지방자치단체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 특이사항 - 성동구·금천구 :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관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 - 연제구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알리는 등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흥시 :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 박람회 참가 및 상해보험 가입 - 춘천시 :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민자치회에 포상 및 인센티브 - 해남군 :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정책, 제도 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사업을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지원 - 거제시 : 도·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 명시 : 66개*, 없음 71개 * 인천 서구 :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포스팀 - 주민자치협의회의 관련 조항 및 내용(구성원, 기능, 행정지원 등) 명시 : 20개

자료: 연구자 구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해당 조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 및 인센티브를 주며 적극적인 운영을 독려하기도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복수의 주민자치회 간의 의사소통과 의견조율, 공동업무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며,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5. 보칙 분석

제5장 보칙은 감독(제23조), 보험(제24조), 운영세칙(제25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8〉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 보칙 분석 (n=137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23조 (감독)	- 행정의 주민자치회 감독 관련 조항 및 내용 명시 : 130개, 없음 : 7개(증평군, 서천군, 담양군, 해남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제24조 (보험)	- 보험 관련 조항 및 내용 명시 : 121개, 없음 : 16개
제25조 (운영세칙)	- 세부 내용 운영세칙 명시 : 122개*, 시행규칙으로 명시 : 15개 * 운영세칙+시행규칙 2개 명시 포함 : 6개(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미추홀구, 남동구)

자료: 연구자 구성

보칙에서는 행정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따른 보험 가입, 조례에 포함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세칙의 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내용을 보칙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 포함, 교육 이수시간 조정 등(특례)내용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로 광진구, 미추홀구, 부평구, 용진군, 대전 동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강원 고성군, 당진시, 홍성군, 산청군 등이다.

6.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주요 분석과 표준조례 비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되어 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빈도가 높게 나온 주요 분석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표준조례와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9〉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주요 분석과 표준조례 비교 정리 (n=137개)

조항	전수조사 분석 주요 내용	표준조례 비교
제4조 (설치 등)	- 분회(또는 지회) 설치 : 24개 - 마을자치회 설치 : 5개	- 분회 관련 실제 명시한 비율은 17.5%이고, 실제 운영 사례는 없음. - 마을자치회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제정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 20명 이상 50명 이하 : 49개 - 30명 이상 50명 이하 : 26개 - 50명 이내 : 16개 - 그 외 지역별 다양하게 구성	- 표준조례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그대로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는 4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반영되고 있음
제7조 (위원의 자격)	- 만 19세 이상 : 48개 - 19세 이상 : 24개 - 18세 이상 : 23개 - 그 외 지역별 다양하게 구성	- 표준조례는 만 18세 이상으로 그대로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는 14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반영되고 있음
제9조 (위원의 선정)	- 교육 이수 사전 6시간 이상 : 100개 - 위원 선정 방법 공개추천 : 120개 - 공개모집 60%, 단체·조직 추천 40% : 50개 - 특정성별 60% 이하 : 117개 - 위원 연령 할당 및 제한 규정 없음 : 119개 - 예비후보자 각 호별 5명 이내 : 56개	- 위원 선정에 있어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은 동일하게 제·개정되고 있으며, 이는 표준조례 구성에 있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 반영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 주민자치회의의 장 1명 : 137개 - 부회장 1명 : 79개, 2명 : 48개 - 호선에 의한 선출 : 127개 - 임원진 임기 2년 : 105개 - 임원진 연임 1회 : 100개	- 회장·부회장 수, 선출은 표준조례와 동일하며, 부회장 구성에 있어 남녀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반영 - 표준조례에서 임기, 연임은 자율 결정인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 다수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 고문 관련 명시 없음 : 109개 - 간사 관련 명시 : 118개(인원수 1명 : 41개) - 사무국 관련 명시 : 71개 - 자원봉사자 관련 명시 : 133개	-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 동일 - 간사 인원수 명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반영되고 있음
제13조 (감사)	- 외부전문가 가능 및 포함 명시 : 118개 - 감사 2명 : 99개	- 감사의 외부 전문가 가능한 표준조례와 동일 - 감사 인원수는 표준조례에 0명으로 되어 있고, 전수조사 결과 2명이 다수
제14조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주민 : 108개 -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 101개	-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 동일 - 다만, 분과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경우도 있음(20개)
제14조의 2 (주민총회)	- 연 1회 이상 개최 : 104개 - 주민총회 횟수 조정 가능 명시 : 25개 - 주민총회 성립 정족수 명시 없음 : 100개 - 주민총회 의결 기준 참석주민 과반 찬성 : 122개	- 표준조례의 내용과 동일, 주민총회 횟수 조정 가능 명시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 - 주민총회 성립 정족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다양한 기준으로 반영(9개) - 주민총회 홍보물품 제작·배포 명시 역시 지역별 반영(8개)
제14조의 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 자치(마을)계획 명시 있음 : 130개 -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주민자치회 통보 있음 : 127개 - 자치계획의 세부적인 계획 나열 : 137개	-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 동일

조항	전수조사 분석 주요 내용	표준조례 비교
제15조 (운영)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월 1회 : 121개 - 임시회의 요건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경우 : 100개 - 임시회의 요건 읍·면·동장, 자치회장 협의하는 경우 : 30개	- 표준조례에 정기회의는 월 ○회로 되어 있고, 전수조사 결과 월 1회 다수 - 표준조례에 임시회의 개최 요건 중 읍·면·동장, 자치회장 협의로 되어 있으나, 전수조사 결과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제16조 (위원의 의무)	- 위원 의무 명시 : 137개 - 월 1회 이상 회의 참석, 1개 이상 분과 활동, ○시간 교육이수, 정기회의를 3회 이상 불참 시 위원 자격 박탈 등 : 8개	- 표준조례에 추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
제18조 (위원의 임기)	- 위원 임기 2년 : 137개 - 연임 가능만 명시 : 51개 - 위원 연임 1회 : 39개	- 위원 임기 2년 표준조례와 동일(단 표준조례에 임기 자율 결정 있음) - 위원 연임 가능은 표준조례와 동일하나, 연임제한 규정은 자율 결정 사항(전수조사 결과는 연임 1회 다수)
제19조 (위원의 대우)	- 무보수 명예직(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지급 가능) : 137개 - 은평구 지역신문, 서산시 업무추진비	- 표준조례의 내용과 동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모든 조례에 포함 : 137개 * 표준조례 1~8개 명시 중 일부 포함 또는 수정 및 추가	- 표준조례의 내용과 동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 명시 : 66개, 없음 71개	- 표준조례에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 명시가 있으나, 전수조사 결과는 없는 곳이 과반 조금 넘음

자료: 연구자 구성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첫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1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6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되었다(2020년 6차 개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대표성·비례성의 강화, 지역의 운영 자율성 존중, 투명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표준조례안은 주민자치 관련 기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현장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된다. T/F를 구성하기도 하고,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여러 과정과 기간을 통해 종합적으로 표준조례안을 구성한다.

정부(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으므로, 표준조례안 작성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정에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전수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을 살펴보면(137개), 조례를 제정한 137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12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조례에 주민의 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분회(또는 지회) 설치는 24개가 명시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정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가 49개로 많았다.

위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 48개로 많으며, 위원 선정에 있어 교육 이수 사전 6시간 이상이 100개, 위원 선정 방법으로 공개추첨이 120개, 공개모집 60% : 단체·조직 추천 40%가 50개, 특정성별 60% 이하 명시가 117개, 예비후보자 각 호별 5명 이내가 56개로 많았다.

주민자치회장은 1명이 137개, 부회장 1명 79개, 호선에 의한 선출이 127개, 임원진 임기는 2년 105개, 임원진 연임은 1회가 100개로 많았다. 간사 관련 명시는 118개(인원수 1명 : 41개), 사무국 관련 명시는 71개, 자원봉사자 관련 명시는 133개로 나타났다.

감사에 있어 외부전문가 가능 및 포함 명시는 118개이고, 감사 인원은 2명 명시가 99개로 많았다. 분과위원회는 구성 시 위원+주민이 108개로 많고,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이 101개로 많았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가 104개이고, 주민총회 횟수 조정 가능 명시는 25개로 나타났다. 주민총회 의결 기준 참석주민 과반 찬성이 122개로 나타났다. 자치(마을)계획을 명시한 곳은 130개로 나타났고,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는 것이 127개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는 월 1회가 121개로 많았고, 위원 임기는 모든 조례(137개)에서 2년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을 명시한 것은 66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71개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반영 및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전국 주민자치회 조례 주요 분석과 표준조례를 비교해 보면, 표준조례에 있는 분회(또는 지회) 설치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24개로 비율은 17.5%이다. 표준조례에 없는 마을자치회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5개 제정되었다. 주민자치회 정수의 표준조례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그대로 적용한 자치단체는 4개, 위원 자격에 있어 표준조례는 만 18세 이상으로 그

대로 적용한 자치단체는 14개로 나타났다. 2020년 표준조례 개정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곳도 있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

위원 선정에 있어 교육 이수 사전 6시간 이상, 위원 선정 방법 공개추첨, 공개모집 60% : 단체·조직 추천 40%, 특정성별 60% 이하 등은 대부분 표준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개정되었다. 회장, 부회장 수, 선출은 표준조례와 대부분 동일하며, 부회장 구성에 있어 남녀 비율(각 1명)을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다(3개). 표준조례에서 임원의 임기, 연임은 자율 결정 사항으로 전수조사 결과 임기는 2년(105개), 연임은 1회(100개)가 다수로 나타났다.

표준조례에 감사의 인원수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반영되고 있다(1명 41개). 감사 인원수는 표준조례에 0명으로 되어 있고, 전수조사 결과 2명이 다수로 나타났다(99개). 분과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경우도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일부 반영하였다(20개). 주민총회 내용은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은 동일하나, 주민총회 성립 정족수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필요 시 다양한 기준으로 반영하였고(9개), 주민총회 홍보물품 제작·배포 명시 역시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반영하였다(8개).

표준조례에 정기회의는 월 0회로 되어 있고, 전수조사 결과 월 1회가 다수로 나타났다(121개). 위원의 의무는 월 1회 이상 회의 참석, 1개 이상 분과 활동, 0시간 교육이수, 정기회의를 3회 이상 불참 시 위원 자격 박탈 등 일부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다(8개). 위원의 임기, 연임 가능은 전수조사의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과 표준조례의 내용이 동일하였고, 연임제한 규정은 표준조례에서 자율 결정 사항으로 전수조사 결과 연임 1회가 다수로 나타났다(39개). 위원의 대우는 일부 수정 및 추가를 통해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다(은평구 지역신문, 서산시 업무추진비 등). 표준조례에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 명시가 있으나, 전수조사 결과는 없는 것이 과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1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공동생산이 가능하도록 제·개정 되어야 한다. 기존 단체 및 공동체가 참여하고(플랫폼 기능), 새로운 주민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협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고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표준조례와 비교 포함). 본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대 산학협력단. (2019). 「주민자치회(후평1동)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자원 조사 연구」. 춘천시.
- 김수연. (2019).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9(1): 3-26.
- 김필두·한부영. (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주·곽임근·최민지. (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김홍주·이세진·박상철. (2021). 세종형 주민자치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1: 111-147.
- 노영은. (2017). 「한국 주민자치회 실시의 바람직한 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 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0).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1(1): 73-95.
- 박상범. (2019).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인석·윤병섭. (2018).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형화와 특성분석: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성공모형의 탐색적 적용. 「한국행정연구」, 27(1): 143-171.
- 신미애. (2018).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1547-1558.
- 신수경. (2021).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철현. (2017).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7(4): 31-53.
- 안철현. (2018).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 175-193.
- 양평호. (2018).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순. (2020).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교식. (2018).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195-216.
- 지역재단. (2018).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지역미래연구원. (2019).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 진동섭. (2019).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제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필수. (2020). 지방사회의 새로운 자치와 마을 연구의 성찰-홍동면 주민자치회의 실험. 「비교민속학」, 71: 145-185.
- 최인수·전대욱·장인성.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철호. (2020).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28(1): 171-192.
- 하태영. (2020). 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 「시민사회와 NGO」, 18(2): 191-239.
- 황상윤·이승민. (2018).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희망제작소. (2020).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성남시.
-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201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20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20).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서」.
- 행정안전부. (2021).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하 태 영: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소명의식, 공감의식, 공동체의식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6), 현재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민자치, 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2020)”, “사회적경제 조직에서의 직무열의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2016)” 등 8편의 논문이 있으며, 2018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haty2005@korea.kr).

손 정 혁: 충남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시설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측정지표 선정, 2010), 사회학 박사 수료를 하였다. 현재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활동지원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주권, 시민참여, 사회혁신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2020)”,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공통교재)(2020)”,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2019)” 등이 있다(kfclub@hanmail.net).

오 지 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주권 강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시민주권 강화요소를 중심으로, 2019), 현재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주권, 참여예산, 시민참여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2020)”,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2020)”, “시민주권 관점으로 살펴본 시민참여정책 평가기준(2020)” 등이 있다(ohjjeun23@gmail.com).

